

#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 진도율 요건 관련 안내

< 2025. 9. 23. >

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원격훈련 진도율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 안내를 통해  
원활한 훈련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내문을 게재합니다.

## □ 진도율 요건 ※ 평가는 60점이상(100점 만점 기준) 달성

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 8시간 초과 불가)
- 학습진도율 = 전체 학습시간 ÷ 전체 소정훈련시간 × 100

## □ 세부 기준

- **(전체 학습시간)**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, 해당되는 차시들의 실제 학습시간을 합산
  - ☞ (사례) 학습시간이 30분인 차시의 경우, 실제학습시간이 15분이면 학습시간 15분 인정, 15분 미만 시 해당 차시는 학습시간으로 불인정
-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

※ 관련: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, 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은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별표 1의 인정요건\*을 갖추어야 함

\* [인정요건 ④평가 및 진도율]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

- **(전체 소정훈련시간)**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
- **(최종 출석률 산정기준)** [<sup>①</sup>전체 학습시간÷<sup>②</sup>전체 소정훈련시간×100] 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

## □ 기타사항

- 사업주 원격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동일 적용 중인 사항임
  - ※ 참고: 원격훈련모니터링시스템(emon.hrdkorea.or.kr) > 공지사항 > 차시별 학습시간 모니터링 변경사항 안내
- 원격훈련과정 심사의 분량산정 기준(25분 이상 시 1시간 인정)은 과정의 훈련비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, 훈련생별 진도율 산정 또는 타 제도권의 훈련생 수강시간 인정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훈련생 안내에 유의(예: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시간은 실수강시간으로만 인정)